## 빠쁜₩┕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

4회 (1/28)

- 1.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다. ( )
- 2. 녹지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 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. ( )
- 3.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 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, 위해 방지, 환경오염 방지, 경관,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. ( )
- 4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이 전 답, 과수원이 아닌 토지(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)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8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. ( )
- 5.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 경작을 한 기간이 5년이면 해당토지는 농지로 본다. ( )
- 6. 꿀벌 15군을 사육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. 따라서 농업보상을 받을수 있는 대상 자에 해당한다. ( )
- 7. 상속(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)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만㎡이 내에 한하여 소유가 가능하다. ( )
- 8.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. ( )
- 9.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읍장 또는 면장으 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. ( )
- 10. 농지의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( )

## 매일정리노트(O,X)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 4회 (1/28)

## 매일정리노트(O, X) 정답

- 1. (0)
- 2. (X) 농림지역은 물건적치하는 경우에 허가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3. (O)
- 4. (X) 8년미만이 아니라 3년미만이다.
- 5. (O) 지목이 아니더라도 3년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농지로 본다.
- 6. (O)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이므로 15군을 사육하므로 농업인이다.
- 7. (X)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1만m<sup>2</sup>이내에 한하여 소유가 가능하다. 그냥 모두가 1만제곱 미터 이내까지 소유가 가능하다고 하면 안된다.
- 8. (O) 임대계약기간이 만약 2년이라면 2년이라는 기간동안은 농지를 이용하지 않지만 그 2년동안 소유할수는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.
- 9. (X) 군수가 아니라 구청장이다. 즉, 시.구.읍.면의 장이다. 군수는 발급권자가 아니다.
- 10. (O) 종전에는 시.군.구에게 매수청구를 한다로 자주 출제된 바 있다.